

PVC바닥재, 표면코팅 기준 미달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기준 충족 ... 기술표준원 감독 강화 필요

PVC(Polyvinyl Alcohol) 바닥재 일부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실은 PVC 바닥재 6사 12개 제품의 프탈레이트(Phthalate) 가소제 함유량과 표면코팅 두께 등 품질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변식장에 등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제품 모두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기준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성남화학의 참그린 1.8mm 및 2.2mm, 진양의 참숯그린 1.8mm, 재영의 스카이 2.2mm 등 4개 제품의 표면코팅 두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재의 표면코팅은 가소제의 용출을 막는 역할을 하며, 코팅 두께의 안전기준은 최소 8 μ m에서 평균 15 μ m 이상이어야 한다.

온돌용이 아니거나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이 0.1% 이하이면 표면 코팅을 생략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제품은 모두 온돌용 및 온돌·비온돌 겸용이고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도 0.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품을 모두 표면 코팅 두께가 최소치인 8 μ m에도 미치지 못하는 3-4 μ m이었으며, 성남화학 제품 2개는 평균값이 11 μ m로 기준인 15 μ m보다 얇았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기준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부적합제품이 발견되고 있다”며 “생산기업의 개선 노력과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1/16>